



제 429회 국회 (임시회)
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디지털역량의 정의에 ‘윤리’ 추가 및 생애주기별
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실시 등〉
■ 허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773호)

2025. 11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이복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	1
III . 검토의견	3
1.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‘윤리’ 추가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 등	3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허영의원 등 10인

나. 발의연월일 : 2025. 7. 28.

다. 회부연월일 : 2025. 7. 2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디지털포용법」이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, 동법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역량의 함양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역시 중요함에도 동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디지털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,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개별 특성 및 역량을 평가·반영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에도 동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·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

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5항·제17조의2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‘윤리’ 추가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실시 등

가. 개정안 요지

- “디지털역량”의 정의에 ‘윤리’를 추가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의 실시·지원할 수 있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스스로 확인·평가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을 진단하는 시스템(이하 “진단시스템”이라 함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2조, 제14조 및 제17조의2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디지털역량”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<u>소양</u> ,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.	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양, 윤리</u>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3. (생략) ② (생략) 제14조(디지털역량 함양 활동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14조(디지털역량 함양 활동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제17조의2(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스스로 확인·평가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을 진단하는 시스템(이하 “진단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단시스템의 정보를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또는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.</u> <u>③ 그 밖에 진단시스템의 구축·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</u>

현행	개정안
	<u>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
다. 검토사항

-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(2025. 1. 21.)되었고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인바,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- 첫째, 현행법 제2조제1항제2호1)에 따른 “디지털역량”의 정의에 ‘윤리’를 추가함.
 - 현행법은 “디지털역량”을 “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, 지식 및 능력”으로 정의하고 있음.
 - 개정안은 이에 ‘윤리’를 추가하려는 것으로, 지능정보기술 등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도덕적 역량도 중요하므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.
- 둘째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1) 「디지털포용법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디지털역량”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,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.

- 개정안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개별 특성 및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.

○ 셋째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스스로 확인·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진단시스템의 정보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의 실시·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
- 개정안은 진단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안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의 실시·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, 시스템과 교육 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- 다만, 현행법에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. 현행법 제17조²⁾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“종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함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.

2) 「디지털포용법」 제17조(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“종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진단시스템 구축이 아닌, 현행 법 제17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추가·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·디지털 확산에 따라 정보의 편향성 이슈, 개인정보 보호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“디지털역량” 정의에 ‘윤리’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지원하고, 개인별 특성·역량 수준에 맞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진단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‘동의’ 의견을 제출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228